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락물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 시행

1. 관련근거

- 가. 임대관리팀-1293호(임대상인연합회 월례회의시 건의사항 조치 요청, 2016.5.23)
- 나. 시설안전팀-2762호(예산내역서 알림[가락물 청과직판 바닥보완공사, 2016.6.01)
- 다. 임대관리팀-1458호(가락물 청과직판 통로 바닥면 보완공사 시행요청, 2016.6.08)
- 라. 기획팀-1588호(주요투자사업 사전심사[가락물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 2016.6.10)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임대상인 민원해결 및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가락물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가. 공 사 명 : 가락물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
- 나. 공사내용 : 판매동 청과직판 바닥 통로 보완
  - 1) 판매장 바닥(통로부분 7,602㎡) 액상하드너 도포
- 다. 소요예산 : ₩ 85,784,000원(부가세 포함)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간
- 마. 예산과목 : 신축매장시설보완공사[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건물]-**임대관리팀**
- 바.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배정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신축매장 시설보완공사	2,443,150	2,100,509	2,098,717	<b>85,784</b>	258,649

사.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아.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또는 [도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

- 붙 임 :
- 1. 사 전 심 사 ..... 1부.
  - 2. 공 사 개 요 ..... 1부.
  - 3. 예 정 공 정 표 ..... 1부.

- 4. 공 사 시 방 서 ..... 1부.
- 5. 청 령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1부.
- 6. 부 당 계 약 특 수 조 건 검 검 표 ..... 1부.
- 7. 공 사 도 면 ..... 1부.
- 8. 수 량 산 출 서 ..... 1부.
- 9. 공 사 내 역 서 ..... 1부.
- 10. 일 상 감 사 요 청 서 ..... 1부. 끝.

★담당자

김두영 팀장

박성규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사장

06/13  
박현출

협조자 팀장

이니세

감사실

감사실

시행 시설안전팀-2983 (2016.06.13) 접수

(2016.06.10)

우 138-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http://www.garak.co.kr>

전화 02-3435-0562 전송 02-3435-0557 / kdy21231@garak.co.kr

/ 공개

[붙임 1]

**주요투자사업 사전심사(가락몰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

시행	2016. 6. 9.	결 재	담당	팀장
접수	2016. 6. 9.		김재령	박정현
공개구분				
일련번호	2016-64		협조	우재수

사업명	가락몰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1일
추진부서	시설안전팀	담당자	4급 김두영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의견												
		YES	NO													
예산	① 예산과목의 부합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예산 집행에 적합												
	② 사업계획과 일치성															
	- 사업변경 계획 수립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대관리팀 요청에 의한 공사로 적정												
	- 사업변경의 타당성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대상인 요청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타당												
	③ 현 시점에서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당함												
	④ 중복투자 내지 예산 낭비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계약	⑤ 원가산출의 적정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준품셈 등에 의한 비용 산출로 적정												
	① 계약 방법의 적정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으로 적정												
	② 계약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정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방계약법에 의해 적정함												
	③ 원가산출의 적정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준품셈 등에 의한 비용 산출로 적정												
조정 내역등	④ 계약서안 및 계약조건 등 적정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사업개요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 판매동 청과직판 바닥 통로 보완 1) 판매장 바닥(통로부분 7,602㎡) 역상하드너 도포 <input type="checkbox"/>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 <input type="checkbox"/> 소요예산 : ₩ 85,784,000원(부가세 포함) <input type="checkbox"/> 신축매장시설보완공사[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건물]-임대관리팀 <input type="checkbox"/> 예산현황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예산액</th> <th>배정액</th> <th>기집행액</th> <th>금회집행액</th> <th>예산잔액</th> </tr> </thead> <tbody> <tr> <td>신축매장 시설보완공사</td> <td>2,443,150</td> <td>2,100,509</td> <td>2,098,717</td> <td>85,784</td> <td>258,649</td> </tr> </tbody> </table>				구분	예산액	배정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신축매장 시설보완공사	2,443,150	2,100,509	2,098,717	85,784	258,649
	구분	예산액	배정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신축매장 시설보완공사	2,443,150	2,100,509	2,098,717	85,784	258,649										
	<input type="checkbox"/>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input type="checkbox"/>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도장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소지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															

[붙임 2]

# 공사 개요

1. 공사명 : 가락몰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

2. 공사개요 및 현황

가. 공사개요

1)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2) 공사내용 : 판매동 청과직판 바닥 통로 보완

가) 판매장 바닥(통로부분 7,602㎡) 액상하드너 도포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

4) 공사금액 : ₩85,784,000원(부가세 포함)

나. 예산현황 : 신축매장시설보완공사[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건물]-**임대관리팀**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배정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신축매장 시설보완공사	2,443,150	2,100,509	2,098,717	<b>85,784</b>	258,649

3. 관급자재 내역 : 해당 없음

4. 설계자 소속 : 시설안전팀 대리 성명 김두영

5. 설계심사자 소속 : 시설안전팀 차장 성명 김주호

6. 감독원 소속 : 시설안전팀 대리 성명 김두영

7. 검사원 소속 : 시설안전팀 대리 성명 김두영

시설안전팀 팀장 성명 박성규

8. 기 성 고 지급횟수 : 없 음

9. 하자보수보증금 기간 : 계약금액의 2%, 1년

10. 지체 상금율 : 1/1,000

11. 설 계 서 열람장소 : 건설안전본부 시설안전팀

[붙임 3]

# 예 정 공 정 표

1. 공 사 명 : 가락물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간
3. 예정공정표

(단위 : 일)

일 정 공 종	착공일로부터 일정					비 고
	3	8	13	17	21	
현장확인 및 자재발주	■					
바탕정리		■				
자재입고 및 현장시공			■	■		
현장정리·정돈					■	
준공검사						■

[붙임 4]

# 공사시방서

##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가락물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3. 목    적 : 가락물 판매동 지하1층 청과직판 바닥 통로 보완공사를 통한 시설 사용  
              고객 및 임대상인의 시설사용 편의 증진으로 상권 활성화 유도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간
5. 공사개요 : 판매동 청과직판 바닥 통로 보완
  - 1) 판매장 바닥(통로부분 7,602㎡) 액상하드너 도포

## 제2장 일반시방서

### 1. 적용범위

- 가. 본 시방서는 『가락물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에 적용한다.
- 나.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 2)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 3) 공업표준화법, 공산품 품질관리규정 K.S규정

### 2. 용어의 정의

- 1) 발주처 : 공사의 주체인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를 말한다.
- 2) 계약상대자 : 발주처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 수행의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 3) 감독관 : 발주처에 의해서 감독의 임무를 수행토록 명받은 자를 말한다.
- 4) 도 면 :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계약상대자가 공사 수행상 필요에 의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도면을 말한다.

### 3. 시공도면

감독관은 공사 착공승인에 앞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세한 시공도면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에 필요한 예정(계획, 실행)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에 대한 착공일, 예정준공일과 시공도, 부분공정표 등을 도시하여야 한다.

### 5. 감독관의 권한

- 1) 공사용 반입자재의 검수
- 2) 공사 시공성과 및 작업의 품질관리
- 3) 작업 진도 확인 및 공정관리
- 4) 공사도면, 내역서, 시방서 준수 등 적정시공 확인

5) 계약상대자의 적정한 계약이행여부 확인

6) 공사 중 도면 및 시방서에 관한 해석 및 현장 안전관리

7) 기타 공사 중 발생하는 경미한 문제의 결정 및 현장 지도 감독

#### 6.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지표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 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있어 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무단으로 변경시공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 공사용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K.S품목)을 사용하며, KS기준이 없는 품목은 동질이상의 자재로 시공하여야한다.

나. 공급원의 승인 : 계약상대자는 주요자재의 발주이전에 감독관에게 공사에 사용하게 될 각종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 및 견본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적합한 재료 : 본 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 재료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현장(가락시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8. 안전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안전시설, 위생규칙 등에 관한 제반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화재와 각종 돌발사고의 응급 조치에 필요한 장비, 기계, 기구류를 항상 보유하고 위치 및 사용법을 공사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있고, 기존 시설물에 도급공사로 인한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이 있으며,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내 적정한 위치에 공사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9. 현장대리인 상주

현장대리인이 이석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0. 불합격 공사의 조치

가. 계약서와 일치하지 못한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불량한 시공상태, 결함 있는 자재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손상, 시공자의 무단 시공 등 기타 이유로 손상이나 공사인수 이전에 하자사항 발생시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대체, 재시공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준공지연의 귀책 사유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발주처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부적합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제거, 대체 및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1. 준공절차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종별 분야별 시공 전경 및 공사 후 전경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공 사진첩(A4) 1부를 제작 후, 준공 요청 시 사진화일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특기사항

### 1. 일반사항 및 가설공사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 결과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다. 공사 중 분진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샌드위치 패널로 공사구간과 영업구간을 완전히 구획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라. 필요시 환기를 위하여 부수적인 설비를 설치한다.

### 2. 자재의 선정

가. 공사의 수행전 시공자재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액상하드너는 기존 바닥에 도포가 용이한 자재를 선정한다.

다. 액상하드너는 무색·무취인 자재를 선정하여 시공토록 한다.

라. 액상하드너는 시공 후 보행이 가능한 자재를 선정하여 시공토록 한다.

### 3. 도장공사

가. 액상하드너의 도포 전 바탕정리 작업을 실시한다.

나. 액상하드너의 도포는 2회를 실시한다.

다. 액상하드너의 도포시 입점 상인의 판매물품 보호를 위해 액상하드너가 비산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라. 액상하드너의 세부 공사시방에 대해서는 자재시방에 의한다.



#### 제4장. 기타공사

- 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현장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자재 및 쓰레기 등은 반출 및 정리하도록 한다.
- 나.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붙임 5]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가락물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공사 위 공사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6360-4881~2  
FAX 6360-4908

2016년 06월 일

발주부서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시설안전팀장 박성규
	감독담당 김두영
계약부서	경영본부장 서강석
	재무팀장 김진중
	계약담당 문민호

[붙임 6]

#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b>사업명</b>	가락몰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				
<b>부서명</b>	시설안전팀	작성자	김두영	연락처	02-3435-0544
<b>제출일자</b>	2016. 06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공사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붙임 10]

[감사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1호 서식] (제21조 관련)

**일상감사 요청서**

<b>건 명</b>	<b>가락몰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b>
<p><b>1. 사업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관리팀-1293호(임대상인연합회 월례회의시 건의사항 조치 요청, 2016.5.23)</li> <li>- 시설안전팀-2762호(예산내역서 알림[가락몰 청과직판 바닥보완공사, 2016.6.01)</li> <li>- 임대관리팀-1458호(가락몰 청과직판 통로 바닥면 보완공사 시행요청, 2016.6.08)</li> <li>- 기획팀-1588호(주요투자사업 사전심사[가락몰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 2016.6.10)</li> </ul> </li> <li>○ 사업내용 : 판매동 청과직판 바닥 통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장 바닥(통로부분 7,602㎡) 액상하드너 도포</li> </ul> </li> <li>○ 공사금액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금액 : ₩85,784,000(부가세포함)</li> <li>-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li> </ul> </li> </ul> <p><b>2. 자체 검토의견</b></p> <p>가. 사업의 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관리팀-1293호(임대상인연합회 월례회의시 건의사항 조치 요청, 2016.5.23)</li> <li>○ 임대관리팀-1458호(가락몰 청과직판 통로 바닥면 보완공사 시행요청, 2016.6.08)</li> <li>- 위 요청 공문에 따른 임대상인 민원 해결</li> </ul> <p>나. 사업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락몰 판매동 지하1층 청과직판 바닥 보완공사를 통한 시설 사용 고객 및 임대상인의 시설사용 편의 증진으로 상권 활성화 유도</li> </ul> <p>다. 사업의 적정성(관련규정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상인 조기 이전 및 시설사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보완공사 시행 적정</li> </ul> <p>라. 기대되는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유통인 점포 시설보완에 따른 시설사용 임대상인 및 소비자의 편의 증진</li> </ul>	